

# 예 산 총 칙

200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3,907,929	20,217,238
일반회계	575,246,551	17,257,397
특별회계	98,661,378	2,959,841
공기업특별회계	50,518,569	1,515,55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0,518,569	1,515,557
기타특별회계	48,142,809	1,444,28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15,356	300,461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4,828,312	144,84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53,416	109,602
수질개선특별회계	50,000	1,50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188,998	95,670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130,136	93,90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918,773	177,56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010,000	30,300
주택사업특별회계	2,093,741	62,812
농공단지특별회계	415,431	12,463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99,131	2,974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549,815	106,494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20,000	6,6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430,000	192,900
도시개발특별회계	3,539,700	106,19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99,90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인건비(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2. 지방채 상환금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 경비

제 6 조 총액인건비제도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